

## 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어떤 연도의 소득으로 반영될까?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직전연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다음연도 연초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시켜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연초에 지급된 성과급이 어떤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느냐에 따라 당장의 전연도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데,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성과급의 실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

성과급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당 성과급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많은 실무자들이 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대해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떠한 지급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성과급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성과급이라고 판단하여 그 귀속시기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명목상으로는 동일한 성과급이라도 어떤 지급규정 및 지급절차, 성과산정지표 등에 의해 지급되는지에 따라 그 귀속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은 회사의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과 잉여금처분과 상관없이 일반 상여금처럼 지급되는 것으로 구분되며, 일반 상여금처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다시 그 성과측정을 계량적 요소로만 측정하여 지급하는 것과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를 합산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성과급에 대해 귀속시기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해 성과급은 처분결의일

기업이 좋은 실적을 달성하여 잉여금처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즉,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급은 잉여금을 처분결의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므로 해당 성과급에 대한 잉여금처분 결의일인 주주총회일이 속한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2021년 12월 중에 직원의 성과급을 잉여금처분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도 2021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2022년 1월이나 2월 중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 서면1팀-482, 2007.04.13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 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임

**이익처분절차를 거치지 않는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시점이 귀속시기임**

이익처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별 성과를 측정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은 일반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인별 성과를 계량적 요소로만 판단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성과급을 계량적 요소(정량평가)로만 판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 등 비계량적 요소(정성평가)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측정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서면1팀-40(2005.1.12.)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성과급의 구분		귀속시기
①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② 이익처분절차없이 지급되는 성과급	계량적요소로만 측정하여 지급되는 성과급	계량적 요소 확정시점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 모두 포함하여 지급되는 성과급	개인별 구체적 지급액 확정시점